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규정

(제정 2023. 3.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본교 및 구성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및 그 소속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교 감사주관 부서 또는 외부 조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책무) ① 본교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신고의무)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

교 감사주관부서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 및 조사부서) 공익신고 접수와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기획예산실(이하 “확인부서”라 한다)로 하고 확인 및 심사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를 조사부서로 지정하여 조사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및 확인

제7조(신고 및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서(별지 제1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확인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나 메일 등의 방식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③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④ 확인부서는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바로바로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신고 내용확인) ① 확인부서는 신고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4. 공익침해행위 내용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6.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등이 조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 ② 확인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 ③ 확인부서는 공익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접수 후에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확인부서는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진술 요구) ① 확인부서는 신고사항의 확인·심사를 위하여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

고인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메일이나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이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확인부서에서는 출장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받은 경우 확인부서는 진술서(별지 제4호)나 진술조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신고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보고) ① 확인부서는 공식적으로 공익신고가 접수된 경우 해당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신고자의 신분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2조(처리 및 처리기한) ① 공익신고심의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심사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신분, 사안의 내용,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부서를 지정하고 접수 내용 등 일체를 이첩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부서가 감사주관부서로 지정될 경우, 감사주관부서는 본교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 특별감사로 조사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 및 처분은 「자체감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내용의 보완이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부서장은 공익신고사항 조사 후 그 결과를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13조(협조요청) 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관련한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소속 교직원 파견·공동조사
4. 각종 자문
5. 그 밖에 신고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 또는 행정부서나 학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사항 조사) ①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해 확인부서로부터 이첩 받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서(별지 제6호) 등을 활용하여 조사를 마친 후 신고사항 조사의견서(별지 제7호)를 작

성하고,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건의 공익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조사부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의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③ 조사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고 내용을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부서장은 신고 내용이 종결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처리결과 통보) 조사부서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신고자 또는 대리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처리중 신고취소) ① 조사부서의 조사중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조사부서장은 중단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총장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신고자는 제19조에 따라 통보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조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공익신고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될 경우에는 인용 이후 처리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기각될 경우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8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 본교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익신고 담당 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교직원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본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는 교직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교직원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 확인부서는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공익신고심의위원회

제21조(심의기구) 공익신고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부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2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익신고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익신고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공익신고자 또는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또는 피조사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신고건을 회피해야 한다.

제2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 내용에 대한 사항
2. 조사부서 지정에 대한 사항

3. 조사 결과의 처리에 대한 사항. 단, 특별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다.
4. 이의신청 내용의 인용 또는 기각에 관한 여부
5. 제22조제1항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신고 처리에 중요한 사항

제2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수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장 보 칙

제2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제 규정을 따르며, 이 외에 공익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28조(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본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조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익 신 고 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일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		
피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주소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연락처	알고 있는 경우 기재	소속	알고 있는 경우 기재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					
공익신고 내용					
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별첨가능				
위와 같이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익신고	제목			
	접수일자		접수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1. 조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조사·확인하는 과정(내부결재 및 신고자 보호·보상 절차 포함)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귀하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 내용 관련정보를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			
	2.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이첩(송부)하게 됩니다. ☐ 동의 ☐ 부동의			
타기관 신고 및 쟁송 여부 등	☐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신고사실 있음 (신고기관 : 신고일 : 조치결과 :) ☐ 민사형사·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및 이에 준하는 절차 진행 중 ()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진 술 서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본인은 공익신고사건(접수번호: 제 호)의 (신고자, 참고인)(으)로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자필진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실관계 확인서						
확인자	소속				소속 부서장	
	성명		직위		연락처	
상기 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진술)하고 자필로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진술)자:					(인 또는 서명)	
조사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고사항 조사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제목				
신 고 자	성명		소속	
피신고자	성명		소속	
처리의견	[] 조치 [] 종결 [] 기타			
위반유형				
관련 규정 또는 법규				
이첩내용				
조사내용	※ 별지 첨부 가능			
증거서류 등				
처리의견 세부내용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부서 처리과정			
	[] 동의 / [] 부동의			
20 년 월 일				
조사부서장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		접수일자				
조사부서 처리결과		결과통보 접 수 일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e-mail			
이의신청 사 유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부서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